

번호	년 월 일	소관 부처	제 목	수신처	비고
1	86. 2. 13.	제1행조실 (내무부)	「파수인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 사업영향 평가제」 실시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.	가 7-53 (-21) 나 1.	
2	86. 4. 3.	제1행조실 (총무처)	공무원 근무태세 강화에 관한 지시		
3	86. 4. 10.	제3행조실 (총무처)	'86년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시	가 (10, 11, 15-18, 20-35, 40-44 46-48) 나. (01)	
4	86. 5. 21.	제1행조실	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협조강화	가 (07, 10, 11, 15-18, 20-35, 60-61)	
5	86. 7. 4.	총무처 (제1행조실)	하절기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	가. (07, 10, 11, 15-18 20-35, 40-53, 60) 나. 1,	
6	86. 8. 19.	총무처 (제1행조실)	비정기적에 대한 인사관리지침.	가. 나 1.	

총 무 처

국무총리지시 제 6 호 (720-4345)

1986. 8. 19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지침

특정한 사업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위원·연구위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첨부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지침 1부. 끝.

6

국 무 총 리

수신처 가, 나 1

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지침

1. 지침의 적용대상

비정규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구분에 의한 공무원인

(경력직 : 특정직 · 일반직 · 기능직
특수경력직 : 정무직 · 별정직 · 전문직 · 고용직)

이 아니며 특정한 사업의 전문적인 조사 · 연구 기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 · 자체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함.

(예시)

- 각종 위원회의 전문위원 · 연구위원 · 보조요원
- 각종 기금사업의 관리요원
- 기술, 지도 · 점검요원 등
- * 각 기관별 비정규직 별첨

2. 지침의 목적

- 비정규직의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록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이들의 신분 · 계급상 대내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고,

- 이들에 대한 위촉절차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부적격자나 자격 미비자가 위촉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자격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또한 이들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,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·국가기관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을 감안, 이들에 대한 합리적 복무규율을 설정·운영함으로써 직무수행태도와 품위를 높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음.

3. 내용

가. 신분관계의 명확화

- 위촉 근거법령 운영규정의 개정
비정규직의 위촉 근거가 되는 법령·자체운영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이들의 신분에 대하여 사실상 고용관계임을 명시하여 대내외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법령·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함.
(예시) “공무원이 아닌 ○○위원을 둔다.”
- 위촉시 신분관계의 주지
위촉장에 공무원의 신분 및 계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용어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함.

(예시) “전문위원(○급상당)을 위촉함”

→ “전문위원을 위촉함”

◦ 보수지급기준의 개정

보수지급기준 등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의 계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“○급상당” 등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함.

- 예산편성기준 및 각급기관의 예산서

* 경제기획원 및 각 중앙행정기관장 조치사항

- 보수지급 명세서

(예시) “○급상당 월○○원을 급함”

→ “월 ○○원을 급함”

나. 위촉절차의 엄격화

◦ 위촉자격기준의 설정

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비정규직에 대하여 담당직무별로 전문분야에 관한 학력·경력·인품 등에 관한 자격요건을 객관화하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.

◦ 위촉자격 심사의 강화

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엄밀히 심사하고 신원조회, 전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함.

다. 복무규제의 합리화

- 복무규율의 설정

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그 담당 직무의 성격·분야 등에 따라 각 기관별로 설정에 맞게 복무규율을 마련하여 복무규율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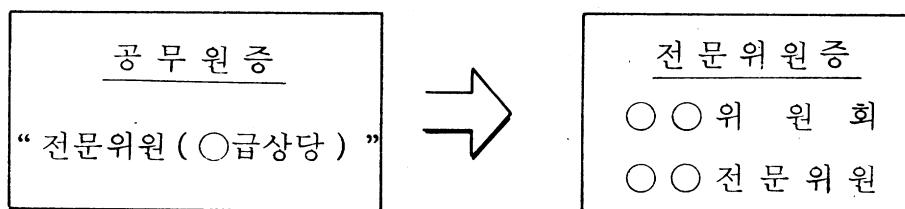
- 복무규율 위반자에 대한 규제 강화

비정규직이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해촉 등의 규제조치를 엄정히 행하여 복무규율의 실효성을 보장함.

- 신분증의 발급

이들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, 다음 예시와 같이 별도의 신분증으로 발급하여야 하며, 이미 공무원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.

(예 시)



4. 행정사항

- 관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·협의

- 비정규직의 신분관계, 위촉자격기준, 보수지급기준, 복무에 관한 자체운영규정은 86. 9. 30까지 이를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,
 - 대통령령이상의 법령은 관계법령 제정 또는 개정시 이를 협의토록 함.

- 개정규정에 의한 비정규직의 재위촉

- 재직중인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마련된 자격 요건에 의해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'87. 1. 1 재위촉을 하여 야 함.

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

부처명 :

소속·담당업무	직명	인원	근거법령·규정	비고

* 위 표의 비정규직 현황은 총무처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으로서 “지침”의 시행에 참고하기 바람.